

“New Actuary with New Paradigm”

	보 도 자 료			
	보 도	배포 후 즉시	배 포	2023.11.13.(월)

책임자	전용범 부회장(yb_jun@actuary.or.kr)	총 4면
담당자	정도희 팀장(02-6383-3805, dh.jeong@actuary.or.kr)	

제목: 『보험계리사법안』 발의(2023.11.09)

- ◇ 윤주경 의원(국민의힘), 보험계리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『보험계리사법안』 발의
 - 전문자격사법령 체계에 현재 규정되어 있는 법령을 준용하였으며, 계리사 및 계리법인의 사회적 의무·책임을 강화함
 - 이후 소관위 심사 등의 법안 제정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 추진

I 보험계리사법안 발의

- 윤주경 의원(국민의 힘) 등 12명의 의원, 보험계리사법안 발의(※ 제안일자: 2023년 11월 9일, 의안번호: 25322)
 - 법안은 주요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, 발의 이후 법안 제정 절차*를 거쳐 최종 공포 추진
- * 법안 발의 → 소관 위원회 심사 → 체계지구 심사 → 본회의 심의 → 정부 이송 → 공포

II 보험계리사법안 제안이유

- 보험계리사 제도는 1981년 도입되어 현재 2,000명 이상의 보험계리사가 배출되었으며, 보험계리업무*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세계 7위의 규모로 성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함
 - * 보험회사의 상품개발, 부채산출, 리스크관리 등
 - 그럼에도 타 전문자격사*와 달리 별도의 독립된 법령이 없어 보험계리사와 관련된 내용이 보험업법과 그 하위법령 등에 산재됨에 따라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권한,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
 - * 변호사, 회계사, 세무사, 관세사, 감정평가사 등
 - 또한, 보험계리사 제도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의 책임 보장, 연수 등의 전문성 제고, 징계 등 제재의 법적 규율도 크게 미흡한 실정
- 나아가 실손의료보험·자동차보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제기됨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보험료 산정과 그 검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짐
 - 또한, 퇴직·공적연금 등도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짐에 따라 부실 방지 및 연금가입자 보호 등을 위해 연금자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, 검증의 중요성이 확대됨
- 특히, 2023년부터는 기존 보험부채 평가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는 원칙중심의 국제보험회계기준(IFRS 17)이 본격 시행되고 지급여력제도(K-ICS)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계 및 보험계리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이루어져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보험

금 지급능력을 가늠하는 책임준비금의 산정 및 검증 등과 관련한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으며,

-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공정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법적 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
- ➔ 이에 보험계리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보험으로만 국한되어 있던 보험계리사 제도를 연금·공제 등 다양한 산업으로 육성할 환경을 마련하고 보험계리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해당되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 관련 산업 등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
III 보험계리사법안 주요내용

□ 보험계리사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가. 이 법은 보험계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
- 나. 보험계리사의 업무를 보험상품 기초서류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보험계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시행하고 시험시행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함(안 제5조·제6조)
- 라.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,

등록의 거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)

- 마. 보험계리사의 사무소 개설과 공정·성실의무, 회칙의 준수, 손해배상책임의 보장, 비밀의 엄수, 업무의 제한, 명의대여의 금지 등 보험계리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)
- 바. 보험계리사는 보험계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, 그 등록과 자본금, 업무의 제한 보험계리법인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0조부터 제35조까지)
- 사. 한국보험계리사회의 설립과 회원에 대한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)
- 아. 보험계리사, 보험계리법인 및 한국보험계리사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1조)
- 자. 보험계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2조·제43조)

 한국보험계리사회 The Institute of Actuaries of Korea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(http://www.actuary.or.kr)
--	---